

【 인제군 공고 제2025 - 1506호 】

2026년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

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「2026년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4일

인 제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2026년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
- 나.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1월
- 다. 사업예산 : 460백만원
 - 지원금액 : 1천만원 한도 (농업인 1인당)
 - 보조비율 : 보조금 80%, 자부담 20%(초과사업비는 자부담)
- 라. 사 업 량 : 50개소 내외(사업예산 범위 내)
- 마. 지원대상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
- 바. 사업내용 : 인제군 소재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제울타리, 전기울타리, 경음기, 기타 방지 시설

2. 접수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5. 11. 5.(수) ~ 1. 2.(금) 09:00 ~ 18:00 ※ 주말 및 공휴일 제외

나. 신청방법 : 방문접수(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제군 환경보호과)

다. 제출서류

- 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붙임) 1부.
-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사유서(붙임) 1부.
-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(붙임) 1부.
-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(견적서) 1부.
- 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(붙임) 1부.
- ⑥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(붙임) 1부.
- ⑦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. ※ 공고일(2025.11.4.) 기준 이후
- ⑧ 농지대장·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농업인 확인서 1부.
※ 농지 임대 중인 경우 토지주 토지사용승낙서, 인감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
※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역일 경우 피해현황 증빙 제출

3. 선정방법

가.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 제5조(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)에 따른 선정기준 적용

- 자부담 비율(30점), 포획신청 허가건수 및 피해보상 신청건수(20점), 특용작물등(10점), 관내 거주기간(20점), 멸종위기 야생동물 피해현황(10점) 현재 거주(10점)
-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수혜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은 후순위로 선정되며, 잔여 예산발생 시 사업진행 검토

나. 지원제외

- 최근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대하여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농림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
-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※ 납부완료 후 지원가능

4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추후 보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라. 본 사업은 본인 명의로 신청한 자에 한하며, 가족 또는 타인의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5. 문 의 처 : 인제군 환경보호과 생태환경팀(☎ 033-460-4468)

붙임 :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(서식)